

# 2018 상반기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집

## 공공누리 캐릭터 소개



### 공마루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항상 궁금해 하는 코가 빨간 아이이다.  
모자의 공공누리 뿔을 사용해 공공저작물의 유형을 판독할 수 있다.



### 공누리

항상 볼이 빨간 공마루의 절친한 친구이다.  
손가락을 사용해 공공저작물을 고품질로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다.



### 공나래

공공누리 제도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천사이다.  
날개(나래)를 이용해 공공누리 제도를 대한민국 온 누리에 알리고 있다.

# 목차

## I. 공공저작물 일반

- 개념, 범위 등

## II.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

- 계약, 내규, 정책 등

## III. 공공저작물 제공

- 개방, 공공누리, 신탁 등

## IV. 공공저작물 이용

- 이용범위, 출처표시 등

## V. 공공누리 연계

## VI. 기타

## Q1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관 내부 영상회의록이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의 장면을 단순 촬영한 영상물은 어문저작물의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문 저작물의 원작자 즉 회의 참석자의 지위에 따라 공공저작물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기관 소속 직원의 회의 자료라면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공공저작물이 되지만, 외부 제3자의 회의 자료라면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별도의 동의를 받은 후 자유이용 개방이 가능합니다.

한편 영상물이 단순 녹화물이 아닌 창작적인 영상 저작물이라면, 즉 촬영 기법이나 편집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영상물 자체의 저작권 주체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 내부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므로 공공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외주업체와 촬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촬영자나 업체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면 공공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2

공공기관 직원 연수에 사용하는 교육 자료에 이전 해 교육 자료를 출처표시 없이 이용한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나요?

이전 해의 교육 자료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한편, 업무상 저작물이 아닌 직원 개인의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저작권 제한 조항에 따라 제한적인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역시 출처 표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



### Q3

공공기관의 직원이 휴직 중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도 업무상저작물로서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이나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법인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 중 계약상 다른 정함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9조). 그런데 직원이 휴직 중 개인적으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은 기관이 기획에 참여한 바가 없고,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공표된 명의도 개인이므로 계약상 저작권이 기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상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의미하는데(저작권법 제24조의2), 사안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을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원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Q4

공공기관의 로고도 공공저작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로고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기관에서 로고 등은 상표 등록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로고를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고 허락을 얻어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도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인 지도는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자연물과 도로 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서비스하는 지도 중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것은(삽화가 포함된 관광안내지도 등)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물의 권리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 제작된 지도에 대해 저작권 양도를 받은 경우라면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Q6

공공기관에서 사진 촬영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직원이 촬영한 사진도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요?

기관이 저작물 작성을 기획하고 기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사진을 촬영하여 기관 명의로 공표한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촬영된 사진의 저작자는 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한 사진은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합니다.



Q7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을 요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생산하였으나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저작물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요?

개정 전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을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하여 인정하였으나, 저작권법 제9조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미공표 저작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가 예정되어 생산되었다면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8

기관 홍보물을 원래 제작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다시 제작하여 배포해도 되나요?

기관 홍보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또한 저작권은 창작한 저작자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타 업체를 통해 재이용하고자 한다면 원래의 제작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락 없이 업체만 변경하여 무단 이용할 경우 이전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업체 변경 및 홍보물의 재이용이 예상된다면 제작 시 관련 계약서 내에 이러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는 것도 분쟁 예방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9

저작권양도계약서와 이용허락동의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공공저작물로 개방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양도계약서는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이전받아 양수인에 저작권이 귀속되도록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용허락동의서는 저작권은 원저작권자에게 존속하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동의만 받는 것입니다.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경우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도 무방하나 실무상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향후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Q10

이미지나 일러스트가 포함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양도를 받았다면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동으로 우리 기관에 귀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서의 내용 해석에 따라 편집물의 저작권만 양도되고 각 소재의 권리는 원작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나 일러스트 등 소재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소재에 대한 권리 확보 의무를 과업 수행 기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Q11

소식지 제작 업무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면서 용역계약서에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및 판권은 발주처에 귀속 한다'라고 기재한 경우, 소식지에 대한 저작권이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나요?

소유권과 저작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판권 역시 법률용어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계약서로는 저작권이 발주기관에게 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Q12

공공저작물 취득 및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관에서 업무상 편의에 따라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은 전담부서 및 담당자 지정이 어려울 경우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가 겸하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지침 제7조 제4항).



## Q13

해외 원문 자료를 번역하여 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의 저작물을 별도의 허락 없이 번역하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원작자의 저작권(복제, 전송,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전문을 그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것은 공정이용 범위를 초과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허락을 받은 후 서비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의 허락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자료를 제한적으로, 즉 저작물 일부만 개작 없이 인용하고 전문에 대해서는 링크 형태로 서비스하는 방법을 권고드립니다.



## Q14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원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을까요?

허락 없이 제3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행정을 위한 내부 자료로 복제(저작권법 제23조), 도서관의 자체보존을 위한 도서관 복제(저작권법 제31조) 등 저작권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면 디지털 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서비스를 목적으로 디지털 복제를 한다면 원작자 또는 저작권재산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저작자 사후 70년, 업무상저작물은 공표 후 70년 도과)된 고서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허락 없이 복제, 전송이 가능합니다.



## Q15

기관에서 주최한 정책 제안 공모전 결과물을 이용할 때에도 저작권 양도를 받아야 하나요?

저작권법은 정책 제안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정책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 저작권 양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안서에 표현된 어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므로 서술된 내용을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이용허락 또는 양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Q16

외부 연구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보고서의 저작권은 창작자인 외부 연구자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공개를 위해서는 저작권(복제, 전송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관에서 연구 및 보고서 작성을 의뢰한 것이고, 작성 의뢰 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홈페이지 공개를 전제하였다면 별도의 허락 없이 홈페이지 공개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보고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재이용허락) 공공누리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원작자로부터 추가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공개에 대한 허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을 통해 보고서 공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17

비보호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적용해야 하나요?

비보호저작물이란 법령, 조례, 규칙, 조약, 국가나 지자체의 고시·공고·훈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 등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7조). 이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임을 표시하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Q18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한 자료를 출처표시 없이 이용하는 업체에 경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거 규정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 이용자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이를 위반한 이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8조 2호). 또한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제1항 1호).



## Q19

공모전 수상자로부터 출품작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받았다면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의 경우 이용허락의 주체 및 이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상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용허락의 범위는 '주최 기관 내부의 자유로운 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의미하므로 이용허락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통해 공공누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용허락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 검토 후 공공누리 기타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Q20

공공누리 유형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해당 기관 외에 제3의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범위에 따라 제1유형 내지 제4유형을 선택하여 부착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저작권자가 공공누리 부착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공누리를 부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 Q21

저작권 등록된 기관 캐릭터의 경우 영리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을 부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 등록 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용료 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후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신탁관리를 통해 이용료 징수 관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 하에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자유이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Q22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이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제공 신청을 한 뒤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홈페이지 등에서 개방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은 일반 이용자에 대해 영리적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광범위한 이용 허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 정보공개청구와 달리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제공 신청 시에도 기관이 저작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 Q23

지자체의 행정처분 문서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행정처분 문서는 특별히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창작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닙니다(저작권법 제7조). 또한 대부분의 처분 문서에는 처분대상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4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에 CCL을 적용하여 재배포해도 될까요?

공공누리는 저작물을 생산관리하는 공공기관 등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출처를 표시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저작물에 공공누리 또는 CCL을 적용하여 재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Q25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 공공데이터제공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공누리 미적용을 근거로 제공 거부가 가능한가요?

공공누리는 이용자가 이용 조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표시 제도입니다. 공공누리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은 저작권법 및 공공데이터법 취지에 따라 저작권을 확보한 저작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미적용을 이유로 제공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공공데이터제공신청에 대하여 기관은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제3자의 권리가 현저하게 침해되는 경우 등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제공 거부할 수 있습니다.



Q26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 자료에 공공누리 몇 유형을 적용해야 하나요?

보도 자료는 기관 소속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저작자가 되기 때문에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도자료 내에 창작성 있는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진 등 소재의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진 또한 기관에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다면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식별 가능한 초상이 포함된 사진은 제3자의 영리 이용 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공공누리 기타 유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 Q27

이미 출판 및 판매되고 있는 저작물의 권리를 확인해보니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용 중인 출판사에 대해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공공저작물을 불법 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5조). 따라서 권리 확인 결과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시 제3자의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28

외부 강사가 제공한 강의 자료에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기관 내부 교육을 위해 강의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의안의 저작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 강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것은 강사 개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 있으므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의 자료의 저작권을 기관이 양도받거나 공공누리 적용에 대해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강의안 작성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공누리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단순 공개의 경우도 강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29

공공누리를 부착한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를 부착한 것이 저작권의 포기는 아니므로 공공누리를 부착하더라도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을 불문하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제12조 및 제3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누리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Q30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한 공공저작물을 출판사에서 그대로 출판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원칙적으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두 가지 유형을 부착하신 경우에는 출판사가 공공저작물을 유료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국·공유재산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이거나 기타 자유이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하거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용료 징수를 통해 출판사 등으로 하여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Q31

기관의 보도자료 중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된 자료를 출처표시 없이 이용하는 언론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공공누리 모든 유형이 출처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된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출처표시 없이 이용하는 경우 공공누리 이용약관 위반 또는 출처표시 위반으로 이용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32

오프라인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마크를 어디에 부착해야 하나요?

앞표지 오른쪽 상단에 부착하실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기관 내부 결정에 따라 부착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 Q33

변경 및 가공을 금지한 자료(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가공해서 쓰고 싶다는 요청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공누리 유형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공공기관 등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재산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누리에 표시한 이용조건과 달리 개별적 이용 허락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의 저작자와 공동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동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34

공공누리 제2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기업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 제2유형은 영리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영리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직접적인 대가를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광고, 홍보 또는 회원모집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3고합1230 판결). 이와 같이 기업이 자사 홍보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한 경우에도 영리 이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공공누리 제2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기업 홈페이지에 무료로 게시하였더라도 기업홍보에 사용되었다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35

기관 보도 자료에 포함된 사진 중, 식별 가능한 인물 사진은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 어떤 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진에 나타난 인물이 행사의 주체적 역할을 한 기관장이나 임직원, 상부기관 참석자, 세미나 또는 토론회 등에서의 발제자, 강연자, 수상자와 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행사에 참여하였을 때 사진이 찍혀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단순 참석자와 기관에 속하지 않은 제3자의 경우 별도의 초상 동의를 받아야만 공개 및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경우에도 변경 및 영리 이용 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공공누리 제4유형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36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할까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허락 없이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문화재의 경우 촬영 및 이용에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문화재를 그대로 복제한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이용 절차 등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37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명의로 공개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에 따라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도 저작권이 제3자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이는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공공저작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권리 확인 후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 대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로서는 공공누리 표시를 확인한 후 이용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공공누리가 적용되지 않은 저작물은 기관에 별도 문의 후 이용해야 합니다.



## Q38

우리 업체의 수행경력을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도 허락이 필요한가요?

허락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방법에 따라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수행 경력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용 방법이나 범위에 있어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행과 다른 특별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Q39

공공누리가 적용된 다수의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 책 끝머리에 출처를 일괄적으로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저작권법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책 끝머리에 모든 사진의 출처를 일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각 사진의 출처가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시가 부득이하다면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각 사진의 출처를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Q40

공공누리 이용허락 유형에서 “변형”의 의미와  
어문저작물, 특히 연구 자료의 경우 구체적 변형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변형이라 함은 미술, 건축, 사진, 도형 등 공간적 형태로 표현되는 저작물의 형태를 창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예시 : 회화를 조각으로 만드는 경우 등)으로서, 자유이용 대상 공공 저작물의 경우 내용에 대한 변경도 변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저작물 중 어문저작물의 경우 편집 및 변형하여 민간출판사 등에서 별도의 책으로 출판하거나나 앱 등으로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누리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일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이용하실 때 주의하여야 하며,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경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 Q41

기관에서 저작물에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한 후에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는 건가요?

네. 공공누리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아 각 게시물마다 적용하시는 방법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신 후, 한국문화정보원으로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와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완료되면 공공누리 포털사이트에서 공공누리가 적용된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이 검색됩니다.

참고로 신규로 공공누리 연계 신청을 하신 기관은 연계가 완료되었을 때 도입기관 소개 메뉴에서 조회가 됩니다.



## Q42

공공누리 연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여 회원 가입 후, 공공저작물 등록 메뉴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URL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많은 경우에 엑셀 형태로 정리하여 공문으로 송부하시면 됩니다.



## Q43

공공누리 연계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공공누리 연계방식은 현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게시판 형태로 된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웹크롤러라는 자동 수집기를 이용해 저작물이 기관에 등록되며,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자동으로 수집하여 연계됩니다.

홈페이지 형태로 된 공공저작물의 경우는 공공저작물 메뉴에서 등록한 뒤 관리자의 승인 조치 후 수동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 Q44

공공누리 연계를 위해 게시판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 상세 게시물을 모두 연계신청 해야 하나요?

게시판 형태의 공공저작물은 웹크롤러 자동 수집기를 이용해 수집하기 때문에 개별 상세 저작물의 URL을 연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시판 목록 첫 번째 페이지의 URL을 연계신청하시면 자동으로 수집, 연계됩니다.



## Q45

서체프로그램 불법사용으로 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우선 작성자가 내부 직원인지 외주를 준 용역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부업체가 작성주체인 경우 기관이 불법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수급인인 용역업체가 불법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일 내부 직원이 작성주체인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41조 단서(불법사용 방지를 위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입증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편 직원이 불법으로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였거나, 폰트 프로그램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합의가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과다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시면 저렴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Q46

지자체나 도서관에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가요?

발매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화의 경우, 지자체나 도서관 등에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일반 공중에게 상영이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다만 시행령에서 무료 상영이 불가능한 경우(유원시설, 쇼핑센터 등)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후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Q47

시리즈로 발행된 업무상 저작물은 몇 년간 보호되나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이므로, 각 저작물의 발행일(공표일)로부터 70년 동안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41조). 공표일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70년이 경과한 것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입니다. 참고로 보호기간 개정 사항을 반영할 경우 1962년 12월 31일까지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Q48

영화나 드라마 등의 클립영상을 교육 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자료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배포용 자료라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화 영상 중 3분 정도를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 관행에 따른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용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배포용 자료로서 이용된 영상물의 길이가 짧지 않다면 방송사나 제작사 등 저작권이 귀속된 주체에게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49

정부에서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저작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할 때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전부를 외부 업체에게 귀속시킬 수 있나요?

「국유재산법」 제65조의2 제3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이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국가 외의 외부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소유로 하되,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용범위에 대해 사후 서로 간 허락이 필요 없는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방법을 권고 드립니다.



## Q50

기관 홍보를 위해 유명 작가의 문구를 이용해도 될까요?

만일 해당 문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로 조합된 단문이라면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저작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문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영화 ‘왕의 남자’ 대사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문구에 대해 법원은 저작물성을 부정한 바 있고(서울고등법원 2006라503 결정), 가요 ‘내가제일 잘 나가’의 문구를 이용해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으로 광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96 결정).

이용 문구가 단문이 아니거나 특별히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Q51

기관에서 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사진을 이용 중인데 피촬영자인 유명 운동선수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계속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초상권자의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기관이 비록 직접적인 촬영자가 아니어도 침해에 대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진을 이용하기 원한다면 초상권자와 권리 이용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모전 개최 시 응모자에 대하여 초상 이용 허락 등 필요한 이용허락을 미리 받을 것을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초상인이 유명 운동선수라면 초상 사진의 독립적·영리적 이용 시 재산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이 필요하다면 선수 협회 등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Q52

기증받아 설치한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유지 보수를 위해 수선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저작권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기증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저작자에게 여전히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므로 조형물의 수선, 위치변경 시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옥외에 설치된 조형물은 정기적인 수선을 요하기 때문에 이용의 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수선은 가능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 그러나 수선으로 인해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부득이한 범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조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원작자의 작품 의도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위치 변경 전에 원작자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기증을 받으면서 수선, 위치 변경 등에 대해 미리 동의를 받아놓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 Q53

미술저작물의 소장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기관 행사에 작품을 전시해도 될까요?

미술저작물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 원본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따라서 원본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시할 경우 전시 해설 책자에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제물 자체를 전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Q54

도서관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복사, 스캔한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저작물을 복사, 스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요청에 따라 도서관에서 제한적으로 저작물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복제 요구의 목적은 조사·연구 등에 한하고, 복제 방법에 있어서 디지털 형태의 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편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개인 기계를 활용한 복제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복제물을 사적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배포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Q55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등이 폐업 등에 따라 없어지면, 제3자에게 기술이전 등이 불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야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업하였다고 해서 법인의 권리·의무가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법인 청산 절차 완료 전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는다면 제3자에게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표자나 실무자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많고, 청산을 완료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등 법인과 계약을 할 경우, 미리 폐업이나 청산 절차 전 사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서 등에 기재해 두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2018 상반기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집**

